

『구미 숲, 청보리·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』

의 건 서(안)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관련근거 : 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 1호

3. 의견내용

국가하천 낙동강 하천 구역 내 둔치(고수부지)의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, 경제적 타당성, 기술적 타당성,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최적안을 선정해야 할 사항이므로,

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함.

다 음

- 낙동강 둔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,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진정한 수변공간 활용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.

2011. 12.

구미시의회 의원 일동